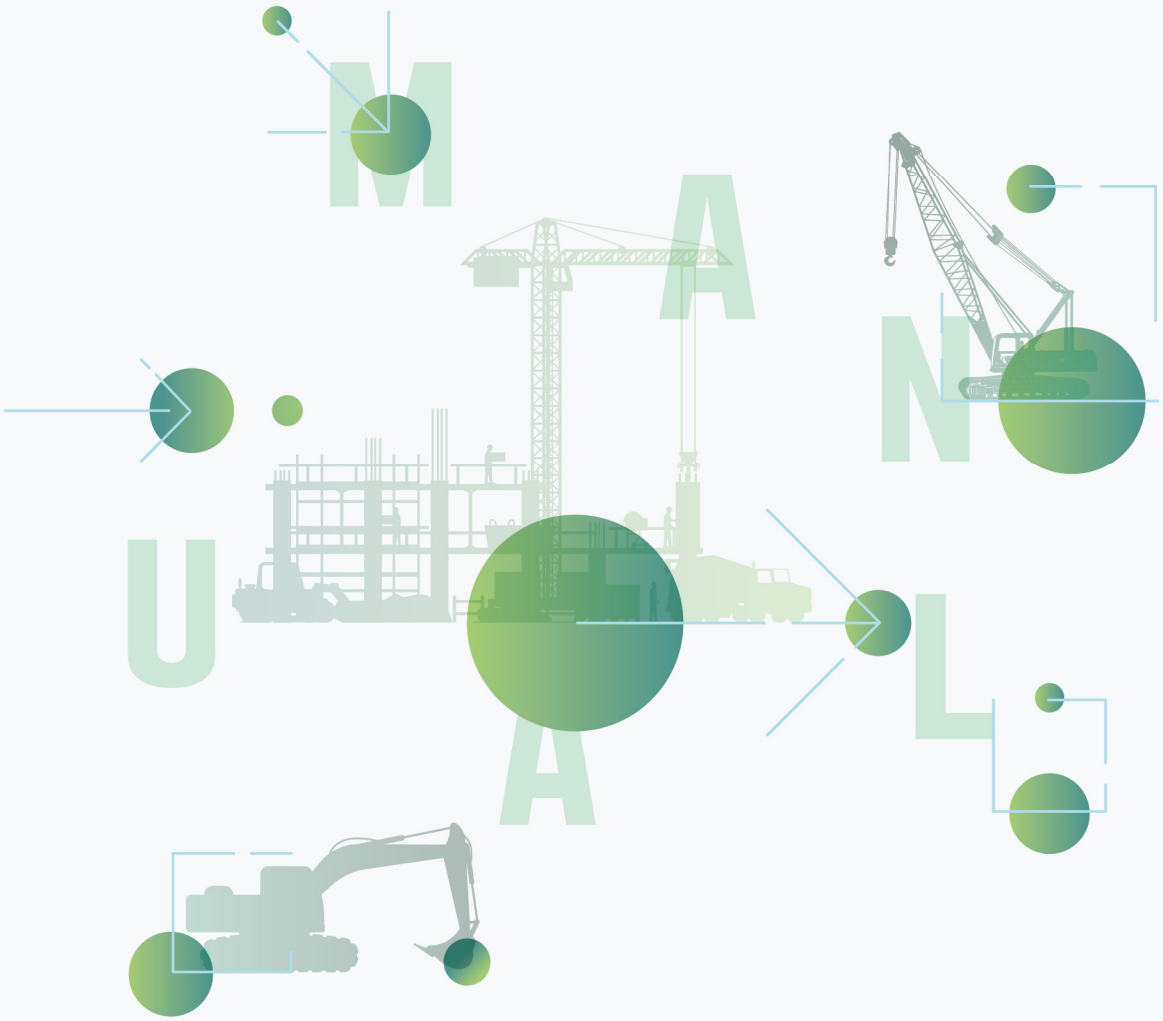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3191-000042-01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용 매뉴얼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제1장 건설공사 하도급 건설사업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건설공사 하도급 개요 ····· 6
2. 건설 하도급공사 건설사업자 주요 체크리스트 ····· 11

제2장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 해설 및 사례

1.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법규 내용 ····· 38
2.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유형 및 관련 사례 ····· 57
3.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점검 방법 ····· 81

제1장



건설공사
하도급 건설사업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1장

건설공사 하도급 건설사업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건설공사 하도급 개요

(1) 건설공사 하도급 및 불법하도급 주요 내용

- 건설공사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하도급은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 용역, 물품 등 전분야에서 활용되는 생산방식
-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하도급의 제한 범위를 벗어난 하도급을 의미하며, 적정 공사비 확보 불가능, 시설물 및 공공의 안전 위협 요인
  - 부적격자에 의한 시공, 저가 및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누수로 공사의 질 저하 및 부실시공 야기
  - 「전기공사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 타 공사업 관련 법령에서도 불법하도급 금지
-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공정건설지원센터) 및 각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발주자는 불법·불공정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단속
  - 신고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하도급 상시 단속의 형식으로 시행

● 불법하도급의 주요 유형 및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

주요 유형	점검 내용	점검 서류	관련 서식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현장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하였는가? • 무자격자가 하도급을 받았는가?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명의 등을 대여하였는가?	•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통보·승낙서 • 하도급 내역서 • 하도급 견적서 • 근로계약서(일용) • 급여지급 명세서 • 임금 지급 관련 계좌이체 내역 • 대금 청구 및 지급 내역 증빙자료 • 원도급 내역서 •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 가설자재 임대계약서 • 자재 구매 계약서 • 계약별 견적서 • 계약별 거래명세서 • 작업일보 • 전자카드 정보	〈부록〉 참고
일괄하도급 위반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가?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았는가? • 동일업종 건설사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특허, 신기술 등)		
재하도급 위반	• 부대공사외 나머지를 전부 하도급 하였는가? •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을 하였는가?		
10억 미만 공사 하도급 위반	• 10억 미만의 도급공사가 맞는가?		
교차수주현장 하도급 위반	• 상대업역 도급을 하지 않았는가? •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특허·신기술 대상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였는가?		

(2)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주요 법령

● 건설공사 하도급 및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등에서 규율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근거 법률	주요 내용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시행령 제25조에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 서명 또는 날인 후 서로 주고 받아야 함
하도급 계약 건설공사정보시스템 (KISCON)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제6항	•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현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 70억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다음 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 도급금액 3억 원 미만 : 5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0억 원 이상 ~ 70억 원 미만: 10% 이상 직접시공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근거 법률	주요 내용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계획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나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일괄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음 – 다만, 수급인이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업종별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특허·신기술 대상 20% 범위 내 가능
재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수급인 서면 승낙+특허·신기술 대상 20% 범위 내,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가능
10억 원 미만공사 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10억 원 미만의 공사 일부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교차수주현장 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제5항	• 상대업역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 승낙하에 특허·신기술 대상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 가능
하도급 계약 발주자에게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 하도급을 한자와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하도급 참여 제한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5항	•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안 됨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 다만,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예외
건설기술인 미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 건설사업자는 시공관리 등을 위해 건설기술인을 1명이상 배치해야 함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서로 보관하여야 함
임금 직접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제2항	• 건설근로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임금대장 미작성 및 명세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제2항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임금비용 매월 미지급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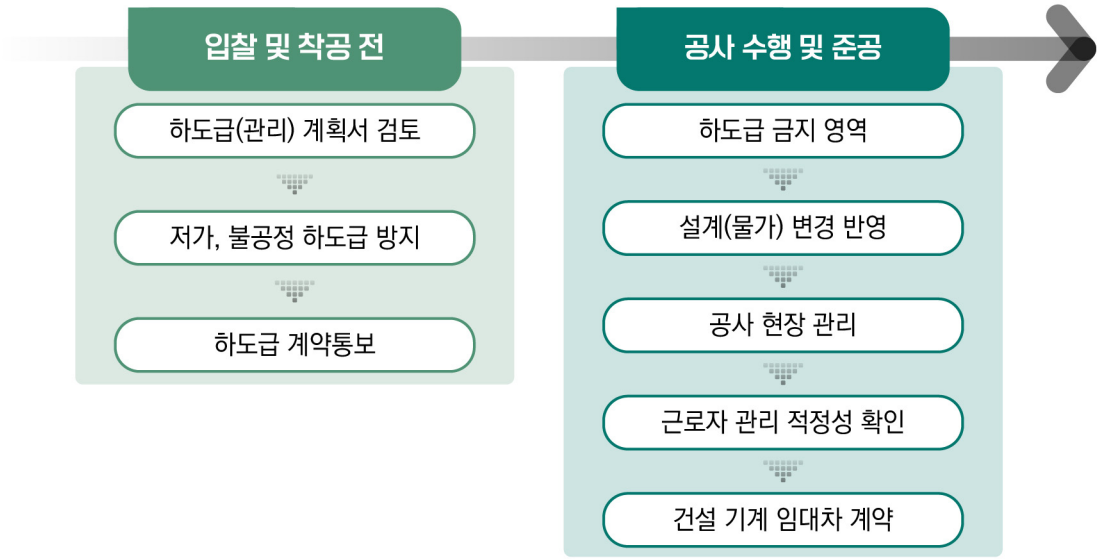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근거 법률	주요 내용
퇴직공제 미신고, 미납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
전자카드 미발급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함

(3) 건설공사 하도급 절차

● 건설공사 하도급 절차는 크게 '입찰 및 착공전' 그리고 '공사 수행 및 준공 단계'로 구분 가능

- 입찰 및 착공 전은 대표적으로 하도급 (관리) 계획서 검토, 계약 통보, 및 저가 하도급 방지가 주요 내용
- 공사 수행 및 준공 단계에서는 재하도급 방지, 건설 현장 관리, 근로자 관리 방안 등이 주요 내용

그림 1 건설공사 하도급 절차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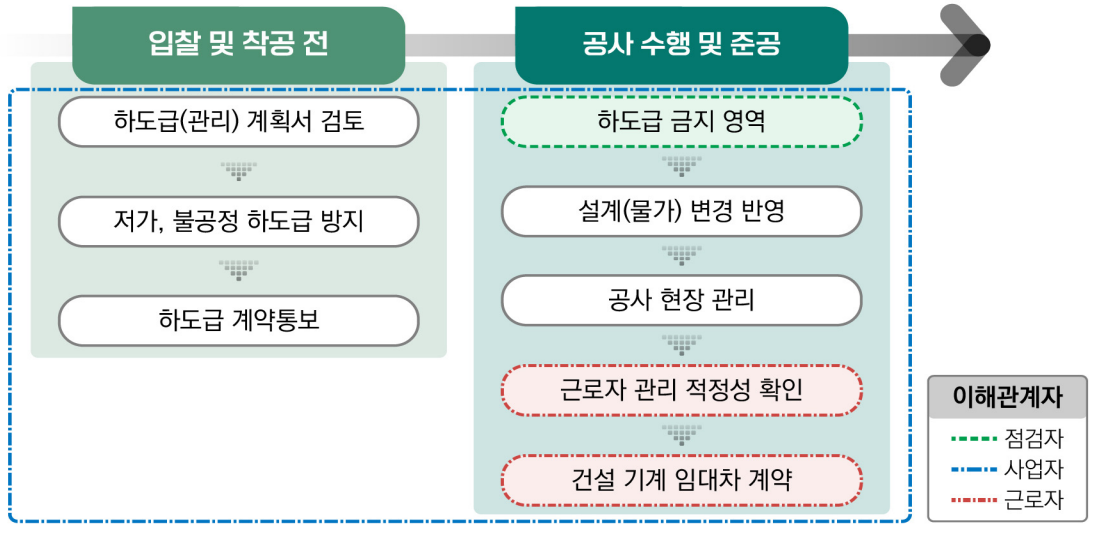


● 건설공사 하도급 절차에 있어 각 항목별로 파악해야 하는 세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

구분 및 단계	카테고리	세부항목
입찰 및 착공 전	하도급(관리)계획서 검토	• 하도급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검토, 이행 감독(변경 시 사전승인 등)여부
	저가, 불공정 하도급 방지	• 하도급률 82%, 예정가격 대비 64% 미만의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적정 여부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 기재 여부 및 계약이행 여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한 특약 부여 여부 확인
	하도급계약 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작성 여부	• 하도급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기관 통보, 책임감리현장의 경우 감리단에 30일 이내 접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반영 및 정산 적정 여부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발주기관 통보 여부
공사 수행 및 준공	하도급 금지 영역	• (재하도급)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 시행 여부 • (무등록업체)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와 하도급 시행 여부
	설계(물가) 변경 반영	• 수급인이 설계(물가)변경으로 증액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증액 반영하였는지 여부
	공사 현장 관리	• 하도급계약 후 착공 시 건설기술인 배치 여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적정배치 여부 등 • 안전관리계획 이행 적정,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정여부
	근로자 관리 적정성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노무비 적정 지급(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여부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교부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 건설공사 하도급 절차에 있어 각 항목별 관계자가 점검·관리해야 하는 주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

그림 2 관계자별 참여하는 대표적인 하도급 절차



2. 건설 하도급공사 건설사업자 주요 체크리스트

● 건설사업자 주요 체크리스트는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하도급 계약 건설공사 정보시스템(KISCON) 미통보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

– ① 입찰 및 하도급 계약 단계, ② 공사 시공 및 준공 단계로 구분

(1) 입찰 및 하도급 계약 단계

번호	불법하도급 사유	관련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①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시행령 제25조	• 시행령 25조에 정하는 사항(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었는가? • 서명 또는 날인 후 서로 주고 받았는가?	• 제99조제2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하도급인 경우 하도급사 제외)
②	하도급 계약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KISCON)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시행령 제26조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계약인가?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하였는가?	• 제99조제3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공사 완료일까지 미통보 혹은 거짓통보 할 경우)
③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계획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시행령 제30조의2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나 감리자에게 통보하였는가?	• 제99조제4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하도급 계약 발주자에게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을 한자와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 내용을 통보하였는가? • 감리자가 있는 공사의 경우 감리자에게 통보하였는가?	• 제82조제1항제4호 (통보를 거짓으로 한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⑤	하수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2항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였는가?	• 제81조제4호: 시정명령 • 제82조제1항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①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 주요 내용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할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

- 공사내용
-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처벌 내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 위반 사례

사례 2-1	경기 공고-제2023-626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위반 내용	안양시로부터 도급받은 'l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정OOO앤씨㈜와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위반
처분 결과	과태료 900,000원

사례 2-2	충북 충주시공고-제2023-1192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위반 내용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면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음
처분 결과	과태료 750,000원

사례 2-3	경기 공고-제2022-6215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위반 내용	"00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관련하여 하수급인 ㈜00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야하나 이를 위반함
처분 결과	과태료 1,500,000원

② 하도급 계약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미통보

㉮ 주요 내용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적고, 다음의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법 제22조제4항·6항 및 시행령 제26조)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s://cws.kiscon.net/main.aspx)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

구분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비고
통보대상	1억 원 이상	4천만원 이상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에 한함)	• VAT 포함 • 관급자재 제외 • 모든 건설공사 (민간공사 포함)
통보방법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https://cws.kiscon.net/main.aspx)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7호, 제17호의2) – 공사개요 – 도급계약(도급금액, 도급업체) –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공사대금수령사항, 하도급대금지급사항) – 공사참여자 현황(현장배치 건설기술인, 하도급계약, 재하도급 계약, 건설기계대여업체)		
통보시기	• 도급(하도급)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 통보한 사항의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 통보대상 범위 내		

㉯ 처벌 내용

● 시정명령(법 제81조제3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제3호)

㉰ 위반 사례

사례 2-4	광주 남구공고-제2024-125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위반 내용	건설공사대장 통보 지연(준공 2023.8.19., 통보 2023.12.27.)
처분 결과	과태료 500,000원

사례 2-5	전남 영광군공고-제2024-955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위반 내용	착공 후 30일 초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였지만, 준공기한 도래 전 건설공사대장 통보
처분 결과	시정명령

사례 2-6	인천 서구공고-제2024-187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위반 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처분 결과	과태료 600,000원

③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계획 미통보

㉮ 주요 내용

●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다음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2항)

- 도급금액 3억 원 미만: 5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0억 원 이상 ~ 70억 원 미만: 10% 이상 직접시공

– 직접시공의 산정방식을 종전의 총공사비 기준에서 노무비 기준(직접시공 노무비/총 노무비)으로 변경

●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 이용 포함)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법 제2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제4항)

–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인정

㉯ 처벌 내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제4호)

㉰ 예외 사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계획 통보 생략 가능(법 제2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의 경우
  -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위반 사례

사례 2-7	경기 공고-제2024-5522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4호
위반 내용	'000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을 위반
처분 결과	과태료 600,000원

사례 2-8	전남 공고-제2023-625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4호
위반 내용	"000 하천재해예방사업" 관련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처분 결과	과태료 500,000원

사례 2-9	서울 공고-제2023-6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4호
위반 내용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처분 결과	과태료 750,000원

④ 하도급 계약 발주자에게 미통보

㉮ 주요 내용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재하도급을 승낙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법 제2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
- 하도급계약의 통보 및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다음의 서류 첨부할 필요(법 제2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3항)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 포함

  *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인정

하도급계약의 통보 첨부 서류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 첨부 서류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 사본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	•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 하수급인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지급 합의서 사본

㉯ 처벌 내용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4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제5호)

㉰ 예외 사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발주자에게 미통보 가능(법 제29조제6항)
  - 수급인의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하도급 제한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 위반 사례

사례 2-10	충남 공고-제2024-1373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위반 내용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처분 결과	과태료 220,000원

사례 2-11	경기 공고-제2024-5799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위반 내용	000에서 발주한 '000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을 위반
처분 결과	과태료 400,000원

사례 2-12	인천 공고-제2024-167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위반 내용	000건설과 하도급 계약한 사항의 통보기한 미준수하였다고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행정처분 요청
처분 결과	과태료 204,000원

⑤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 주요 내용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다음의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 의무(법 제3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

-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times 2$$

㉯ 처벌 내용

- 시정명령(법 제81조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8호)

㉰ 예외 사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가능(법 제34조제2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위반 사례

사례 2-13	서울 서초구공고-제2024-181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위반 내용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처분 결과	과징금 20,000,000원

사례 2-14	경기 공고-제2024-5846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위반 내용	민간에서 발주한 '경기0000교회 신축공사'중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을 위반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4년 08월 30일 ~ 2024년 09월 29일)

사례 2-15	인천 공고-제2024-906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위반 내용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의 의심업체 통보)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4년 04월 03일 ~ 2024년 05월 02일)

㉲ 유권해석 및 판례

유권해석 사례 2-1	법제처 10-0432, 2010. 12. 23.
질의요지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의 준공시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이므로 공사기간을 기성금 지급주기로 하는 기성금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라야 함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times 2$$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출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음
회답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임

(2) 공사 시공 및 준공 단계

번호	불법하도급 사유	관련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①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 현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였는가?	•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 30% 이하의 과징금 • 제96조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 70억원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비율에 맞도록 직접시공하였는가? (3억미만: 50% / 3억~10억: 30% / 10억~30억: 20% / 30~70억: 10%)	• 제82조제2항제2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 30% 이하의 과징금
③	일괄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하였는가?	•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 30% 이하의 과징금
④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은 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했는가? • 제출된 입증자료를 통해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등 동일업종 건설사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 30% 이하의 과징금 • 제96조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⑤	재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는가? (예외: 제29조제3항제1,2,호, 시행규칙 제25조의 7)	•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 30% 이하의 과징금 • 제96조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⑥	10억원 미만공사 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 건설사업자가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일부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였는가?	•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 30% 이하의 과징금 • 제96조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⑦	교차수주현장 하도급제한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제5항	• 상대업역 도급을 하지 않았는가? •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특허·신기술 대상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였는가?	•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 30% 이하의 과징금 • 제96조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번호	불법하도급 사유	관련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⑧	하도급 참여 제한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제5항	• 공공건설공사이지만,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는가? •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인가?	• 제81조제11호(발주자의 하수급인 변경 요구 불이행): 시정명령 • 제99조제11호(시정명령 불응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82조제2항제7호(참여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 30% 이하의 과징금
⑨	건설기술인 미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건설사업자는 시공관리 등을 위해 건설기술인을 1명이상을 배치하였는가? • 적정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인가?	- 제81조제7호: 시정명령 - 제97조제4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⑩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시행령 제16조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기간, 그 밖에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가? •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서로 보관하였는가?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호: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인, 임차인 쌍방 부과)

①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현장

㉮ 주요 내용

●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의무(법 제25조제2항)

-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무등록자 및 공사내용과 다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모두 위반 대상

㉯ 처벌 내용

● 원도급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 하도급자 중 무자격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

● 하도급자 중 무등록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

※ (무등록자 시공)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사 시행
(무자격자 시공)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으나 해당 건설업종 외 공사 시행

㉰ 위반 사례

사례 2-16	경기 공고-제2024-584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민간 발주, '0000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4년 09월 26일 ~ 2025년 02월 22일)

사례 2-17	전북 공고-제2024-1196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6,840,000원

사례 2-18	부산 기장군공고-제2024-1149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45,255,000원

㉱ 유권해석 및 판례

유권해석 사례 2-2	법제처 21-0072, 2021. 4. 28.
질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게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발주하는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가 클수록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담보할 필요성이 크므로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하려는 취지 • 따라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이를 경미한 건설공사 규모로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그 하수급인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제한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문언 그대로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나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사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를 그 하수급인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함
회답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됨

판례 2-1	수원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구단11105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소외인1(민간발주자)으로부터 타운하우스 50세대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외인2(무등록사업자)에게 외벽단열공사를 계약금액 1,265만원에 하도급 • 피고(경기도지사)는 청문절차 이후 '무등록사업자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 처분
판단	• 건설업 등록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법 제25조 제2항, 제16조에서 정하는 하수급인의 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고, 경미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만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필요(비례의 원칙)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량권의 일탈·남용 인정
해설	•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등록 의무의 예외사유이나, 이는 도급계약 관계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에서 경미한 공사를 이유로 무등록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 하도급 위반으로 처벌

②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위반

㉮ 주요 내용

●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다음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법 제2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2항)

- 도급금액 3억 원 미만: 5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0억 원 이상 ~ 70억 원 미만: 10% 이상 직접시공

㉯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 예외 사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시공 의무에 대한 예외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단서 및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위반 사례

사례 2-19	경북 문경시공고-제2024-1355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위반 내용	건설공사 직접 시공 불이행(2023년 김천시 경상북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4년 09월 01일 ~ 2025년 01월 31일)

사례 2-20	경기 공고-제2024-5802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위반 내용	'0000 차로 교통체계공사(차로확장)'와 관련 직접시공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
처분 결과	과징금 23,750,000원

사례 2-21	충남 공고-제2023-932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위반 내용	건설공사 직접 시공 불이행
처분 결과	과징금 31,932,000원

③ 일괄하도급 위반

㉮ 주요 내용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하는 것은 불가(법 제29조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 일괄하도급의 범위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해당

㉯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 예외 사유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76호)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법 제29조제1항단서 및 시행령 제31조제3항)
  -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위반 사례

사례 2-22	서울 강남구공고-제2024-165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일괄하도급 위반(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4년 07월 20일 ~ 2025년 02월 19일)

사례 2-23	경기 공고-제2024-531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00 관망정비공사'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을 위반
처분 결과	과징금 64,354,000원

사례 2-24	경남 밀양시공고-제2023-16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일괄하도급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4년 07월 20일 ~ 2025년 02월 19일, 영업정지 4개월에서 1개월 감면)

㈐ 유권해석 및 판례

판례 2-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사실관계	• 피고(건설사업자)는 “지방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괄하도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시민단체 및 언론의 의혹 제기로 주요 부분의 일부를 직접 시공 – 본 사건은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따른 형사상고사건
판단	•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96조제4호의 위반죄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 • 대법원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체결 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 이후 환송판결(대구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3노64 판결)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
해설	• 일괄하도급 위반죄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시에 성립

④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 주요 내용

- 수급인은 일정한 요건 외에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하는 것은 불가(법 제29조제2항)

㉯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2항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96조제4호)

㉰ 예외 사유

-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20% 범위 내 하도급 가능(법 제2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시행령 제31조의2)
  - 전문건설사업자: 발주자 서면 승낙(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제1호)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20% 범위 내 신기술, 특허,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등(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의2)

㉱ 위반 사례

사례 2-25	경기 공고-제2024-561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00부대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승인없이 20%이상 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19,459,000원

사례 2-26	충북 제천시공고-제2024-836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4,400,000원

사례 2-27	경남 김해시공고-제2023-4984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김해 00공사' 관련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처분 결과	과징금 4,640,000원

㉲ 유권해석 및 판례

유권해석 사례 2-3	법제처 19-0004, 2019. 4. 12.
질의요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주된 전문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를 동일한 업종이 아닌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과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므로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종"의 건설업자에 대해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음
회답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음

⑤ 재하도급 위반

㉮ 주요 내용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 하는 것은 불가(법 제29조제3항)

㉯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2항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96조제4호)

㉰ 예외 사유

-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20% 범위 내 하도급 가능(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7)
  - 전문건설사업자: 발주자 서면 승낙+수급인 서면 승낙+20% 범위 내(신기술, 특허,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등)
  - 종합건설사업자: 발주자 서면 승낙

㉱ 위반 사례

사례 2-28	서울 서초구공고-제2024-176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4,291,000원

사례 2-29	경북 포항시공고-제2024-186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18,674,000원

사례 2-30	경기 수원시공고-제2024-57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5,028,000원

㉮ 유권해석 및 판례

유권해석 사례 2-4	법제처 22-0015, 2022. 4. 6
질의요지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그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지?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는 재하도급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 재하도급할 수 있는 다른 경우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와 재하도급하려는 건설공사가 모두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와 다르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1호의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를 도입하면서,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상대방의 업무영역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총 도급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전문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종합건설업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전문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있게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만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회답	• 종합건설업자는 그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유권해석 사례 2-5	법제처 17-0305, 2017. 7. 24
질의요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서면승낙만 받으면 되는지?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되,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가목)과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나목)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함
회답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함

판례 2-3	인천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구합55477 판결
사실관계	• 원고(전문건설사업자)는 학교법인이 발주한 증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하도급 • 원고는 소외인(무등록자: 판넬 도소매업)과 원고를 '원사업자', 소외인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하는 외주계약서 작성 • 피고(부평구청장)는 무면허업체에게 재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및 제82조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4,870,800원 부과(재하도급금액 40,590,000×24%×1/2 감경)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 • 원고는 근로자대표(십장) A의 요구로 하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무면허업체 명의로 된 각종 보증서, 인건비 초과 청구자료 등을 비추어볼 때, 재하도급 위반에 따라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해설	•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시공참여자(십장)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시공참여자는 2007. 5. 1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2008. 1. 11. 시행)

⑥ 10억 원 미만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 주요 내용

-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불가(법 제29조제4항)

㉯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2항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96조제4호)

㉰ 위반 사례

사례 2-31	전남 영광군공고-제2023-743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지방도000호선 순천 00교 보수공사 총 공사금액 10억미만 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1,198,000원

사례 2-32	경기 공고-제2023-5587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경기도 의정부시로부터 도급받은 전문공사 '00초교 앞 보도육교 정비 공사' 관련하여 10억 미만 도급공사임에도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2,251,000원

사례 2-33	전남 공고-제2023-30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10억 미만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3년 03월 09일 ~ 2025년 06월 08일)

⑦ 교차수주현장 하도급제한 위반

㉮ 주요 내용

- 상대업역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 승낙하에 도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하도급 가능(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

㉯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2항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96조제4호)

㉰ 위반 사례

사례 2-34	인천 공고-제2024-654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 결과	과징금 8,025,000원

사례 2-35	서울 공고-제2024-307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 결과	과징금 1,334,960원

사례 2-36	경북 봉화군공고-제2023-393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 결과	과징금 3,498,000원

⑧ 하도급 참여 제한 위반

㉮ 주요 내용

-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및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수주 불가(법 제29조의3제5항)
  - 하도급 참여제한은 다음의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받은 경우를 의미(법 제29조의3제1항)

-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등

㉯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2항제7호)

⑨ 건설기술인 미배치

㉮ 주요 내용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 의무(법 제4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
  - 해당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의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자격
700억 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	• 기술사
5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 원 이상	•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 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 가능(법 제4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3항)

–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처벌 내용

- 시정명령(법 제81조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7조제4호)

㉰ 예외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건설기술인 미배치 가능(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 포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위반 사례

사례 2-37	강원 공고-제2024-1190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7호
위반 내용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부적당
처분 결과	동일위반행위 금지 시정조치

사례 2-38	경북 상주시공고-제2024-285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7호
위반 내용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부적당
처분 결과	부적절한 건설기술인 배치에 의한 시정조치

사례 2-39	서울 영등포구공고-제2024-1544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7호
위반 내용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부적당
처분 결과	시정명령/처분 전 시정완료

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 주요 내용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

-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보관 의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명시 사항〉

-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처벌 내용

● 300만원 이하 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의3호)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용 매뉴얼

제2장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 해설 및 사례



제2장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 해설 및 사례

1.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법규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① 적용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 등록,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시공 및 기술관리 등을 규율
  - 건설공사의 수행 단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율
  -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을 중심으로 규율
  - 건설기계·자재 및 근로자 계약으로 확대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규율
  - 건설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업을 의미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을 의미

그림 3 건설공사의 법률에 따른 구분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계약 단계를 도급과 하도급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계된 자를 도급인(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으로 규정
- "하도급법"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로 규정

② 주요 변화

㉮ 시공참여자

● 1999. 4. 15.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실명제의 성격으로 종래 관행화된 '십장'을 '시공참여자'의 명칭으로 법률에서 명문화
-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의 측면도 고려

● 2007. 5. 17. 다단계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신 설>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신 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설과급 · 도급 ·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 건설업 종류

● 과거 건설업은 일반·특수·단종공사업 → 일반·특수·전문건설업 → 일반·전문건설업 → 종합·전문건설업 명칭으로 변화

● 오늘날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건설업)으로 구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종류〉

구분	내용	업종
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 업종)
전문공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14개 업종)

㉰ 건설업 등록기준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시설·장비(해당 업종에 한함)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2)

- 2023. 5. 9.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 적용(2023. 5. 9. 시행)
  - 종전에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 특례 적용

-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 또는 개정
  - 기술능력: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2024. 5. 10. 시행)
  - 자본금: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라 약 70% 완화(2019. 6. 19. 시행)
  - 사무실: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명확화(2023. 8. 10. 시행)

〈건설업종별 등록기준 예시〉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법인기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억 5천만원 이상	•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의 범위 안에서 현금 예치 또는 예치금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업역 변화

-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도입(공공공사: 2021. 1. 1. 시행, 민간공사: 2022. 1. 1. 시행)
  -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을 모두 허용하되, 총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 종합건설사업자는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2026. 12. 31까지)
  -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의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 의무

    * 전문건설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종합공사 원도급 미허용(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2026. 12. 31까지)

㉮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강화

●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다음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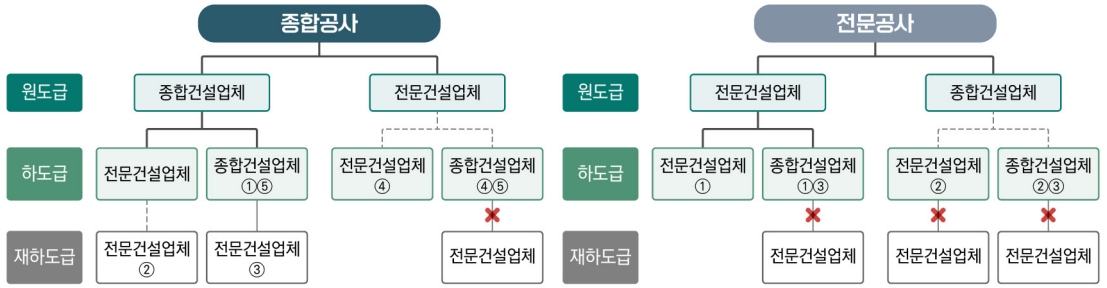
- 도급금액 3억 원 미만: 5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0억 원 이상 ~ 70억 원 미만: 10% 이상 직접시공

– 직접시공의 산정방식을 종전의 총공사비 기준에서 노무비 기준(직접시공 노무비/총 노무비)으로 변경

●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가능(일괄하도급은 금지)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 및 하도급 받은 공사의 20% 범위 내 특허·신기술 대상 공사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
-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종합공사 중 전문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하에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발주자 및 수급인의 서면 승낙과 하도급 받은 공사의 20% 범위 내 특허·신기술 대상 공사에 한하여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건설업 하도급 허용 현황도〉



① 일괄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1항)
② 20% 범위 내+발주자 및 수급인 서면승낙 등(법 제29조 제3항 제2호, 시행규칙 제25조의7)
③ 발주자 서면승낙(법 제29조 제3항 제1호)
④ 발주자 서면승낙+20% 범위 내 특허·신기술 대상(법 제29조 제5항, 시행령 제31조의2)
⑤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① 발주자 서면승낙(법 제29조 제2항 제1호)
② 발주자 서면승낙+20% 범위 내 특허·신기술 대상(법 제29조 제5항, 시행령 제31조의2)
③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③ 건설업 등록

㉮ 주요 내용

- 건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시설·장비(해당 업종에 한함)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위임(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2)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 처벌 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 처분(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95조의2)

㉰ 예외 사유

- 다만,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등록의 예외사유이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의2)

〈건설업 등록의 예외 사유: 경미한 공사〉

종합공사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기타공사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건설업 등록기준 처벌 제외 대상: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 •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사무실	•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 유권해석 및 판례

유권해석 사례 1-1	법제처 23-0396, 2023. 7. 14.
질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이유	•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해 달리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음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도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회답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음

유권해석 사례 1-2	법제처 19-0587, 2020. 1. 23.
질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등록기준으로서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소음·진동 분야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술인력 및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은 이에 대한 등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환경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회답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유권해석 사례 1-3	법제처 19-0360, 2019. 09. 17.
질의요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 건설업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은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음 •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림자원법령에서 규정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한 건설업의 등록 기준은 동일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는 개별법에 의해 새로운 건설업이 생겨나 해당 업종의 등록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 다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건설업을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회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여야 함

유권해석 사례 1-4	법제처 16-0441, 2016. 10. 19.
질의요지	• 어장에서의 양식(養殖)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어장의 바닥에 자연석을 새로 까는 일을 하려는 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이유	• 어장의 관리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장관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과 유사한 업무는 "어장정화·정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장의 바닥에 투석공사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수중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투석공사'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과 공종의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중공사업의 성격을 갖는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중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2016. 2. 11.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연석을 던지는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수중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수중공사업의 성격을 갖는 투석공사 뿐만 아니라, 수중공사업의 성격을 갖지 않는 '투석공사'도 수행할 수 있고, 만약 수중공사업의 성격을 갖지 않는 '투석공사'인 경우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만 등록하고 수행할 수 있음
회답	• 어장에서의 양식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어장의 바닥에 자연석을 새로 까는 일을 하려는 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유권해석 사례 1-5	법제처 15-0718, 2016. 3. 4.
질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제3호나목에 따른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
이유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 각 호에 규정된 자격자 또는 기술자는 각 호별로 한정하여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는 업종별로 정한 기술능력 중 일부를 다른 기술자(나목), 자격취득자(마목), 교육이수자(라목, 바목)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업종의 전문성과 기술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보가 쉽지 않은 자격취득자를 다른 또는 유사한 종류의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적으로 열거된 업종별 기술능력의 기준을 보완하려는 취지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표 비고에서 구분하여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없음
회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제3호나목에 따른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로 갈음할 수 없음

판례 1-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61932 판결
사실관계	• 원고(건설사업자)는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 피고(지방자치단체의 장)는 건설업 등록업자의 자본금 유지요건 위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산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 • 원고는 처분 이후 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결정
판단	•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는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설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 원고가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사실상태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은 적법

판례 1-2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사실관계	• 피고(무등록 사업자)는 아파트 10개동에 대한 방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합계 8,155만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다음 공사금액 965만원의 3개 계약, 350만원~660만원의 10개 계약으로 분할하여 시공
판단	•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고, 동일한 공사는 전체 공사 또는 개별 공사에 따라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각 공사의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수행되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 • 대법원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설	• 건설업 등록제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목적 • 당사자들이 수 개의 공사에 대하여 하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사가 목적물, 내용이나 시공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공사로 보아야 하고, 동일한 공사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판례 1-3	수원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구단14138
사실관계	• 원고는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 피고(안양시장)는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단속실태조사'에 따른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건설기술자의 '상시 근무' 위반)을 이유로 각 업종에 대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재처분 가능 • 원고의 기술인력 점검 결과 각각 다음의 상시 근무 부정 – A: 개인사업체 운영 및 겸업 – B: 대학교 겸직 – C: 개인사업체 운영 및 겸업 – D: 다른 법인 직원으로 재직 및 겸직 – E: 다른 법인 감사로 재직 및 겸직 – F: 다른 법인 사내이사 재직 및 겸직 • 제재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해설	• 2023. 5. 9.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2024. 5. 10. 시행) – 상시 근무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2) 건설기계관리법

① 적용 범위

-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건설기계의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을 규율
  -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점검 등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 확보 사항 규율
  - 건설기계사업 및 조종사면허 등 건설공사의 안전과 공정 계약 사항 규율
  -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사항으로 확대 적용
- 「건설기계관리법」상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상 주요 용어〉

- 건설기계: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
  -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를 업으로 하는 사업
  - 건설기계매매업: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

〈현행 건설기계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별표1〉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명	범위
9. 롤러	•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 포함)
15.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 공기배출량이 매 분당 2.83세제곱미터(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
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보복조치의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3) 등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제출 의무를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경우 발주자 통보 및 발주자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 의무를 별도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② 건설기계사업

●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 의무(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의무 내용〉

유형	등록 구분	등록 대상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포함)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 •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시장·군수·구청장
건설기계정비업	•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부분건설기계정비업 • 전문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보관 의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명시 사항〉

-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 요청 가능(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 분기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이행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림 의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 의무
-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의무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 의무

(3) 근로기준법

①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규율
  -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미적용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 적용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원칙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포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예외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구분	적용 법 규정
제1장 총칙	• 근로기준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 근로기준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 근로기준법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제재 사항을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연대책임'(법 제44조의2)을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은 수급인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관리 의무 부여(「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의무 부여(「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

② 임금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의 예외: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등

● 도급 사업에 있어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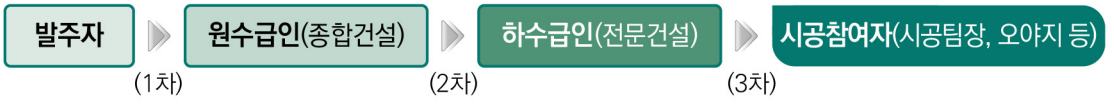
〈수급인의 귀책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은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2차례 이상 도급: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까지의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예시〉



-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업을 영위하는 자(시공참여자 등)
-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은 연대책임: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불문

● 건설업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근로기준법 제44조의3)

-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기재사항〉

기재사항	예외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 고용 연월일	–
• 종사하는 업무	–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 근로일수	–
• 근로시간수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농·축산업 등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농·축산업 등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① 적용 범위

- 건설근로자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지원·촉진, 퇴직공제금 등을 규율
- 건설근로자법상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건설근로자법 제2조)

〈건설근로자법상 주요 용어〉

- 사업주는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으로서,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등 포함)
- 건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
-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
-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으로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도록 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의무 부여(「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
-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다음의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 포함)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포함)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할 의무(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제1항)
  -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할 의무(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제1항)
  - 도급인은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의무

③ 공제사업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할 의무(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
  -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구성
  -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함께 제출할 의무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할 의무(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사항〉

-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이 경우 도급인이 공제회에 내야하는 금액은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정)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회신 의무(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3항)

● 다음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할 의무(법 제13조제4항)

〈전자카드 발급 사업장〉

- 1억원 이상 공공공사 및 50억원 이상 민간공사의 사업장
-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 전자카드 발급 사업장은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의무
-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 사용 가능

2.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유형 및 관련 사례

(1)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① 주요 내용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할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

- 공사내용
-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처벌 내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③ 위반 사례

사례 2-1	경기 공고-제2023-626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위반 내용	안양시로부터 도급받은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정OOO앤씨㈜와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위반
처분 결과	과태료 900,000원

사례 2-2	충북 충주시공고-제2023-1192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위반 내용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면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음
처분 결과	과태료 750,000원

사례 2-3	경기 공고-제2022-6215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위반 내용	"00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관련하여 하수급인 ㈜00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야하나 이를 위반함
처분 결과	과태료 1,500,000원

(2) 하도급 계약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미통보

① 주요 내용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적고, 다음의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6항 및 시행령 제26조)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s://cws.kiscon.net/main.aspx)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

구분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비고
통보대상	1억 원 이상	4천만원 이상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에 한함)	• VAT 포함 • 관급자재 제외 • 모든 건설공사 (민간공사 포함)
통보방법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https://cws.kiscon.net/main.aspx)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7호, 제17호의2) – 공사개요 – 도급계약(도급금액, 도급업체) –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공사대금수령사항, 하도급대금지급사항) – 공사참여자 현황(현장배치 건설기술인, 하도급계약, 재하도급 계약, 건설기계대여업체)		
통보시기	• 도급(하도급)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 통보한 사항의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 통보대상 범위 내		

② 처벌 내용

●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③ 위반 사례

사례 2-4	광주 남구공고-제2024-125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위반 내용	건설공사대장 통보 지연(준공 2023.8.19., 통보 2023.12.27.)
처분 결과	과태료 500,000원

사례 2-5	전남 영광군공고-제2024-955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위반 내용	착공 후 30일 초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였지만, 준공기한 도래 전 건설공사대장 통보
처분 결과	시정명령

사례 2-6	인천 서구공고-제2024-187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위반 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처분 결과	과태료 600,000원

(3)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계획 미통보

① 주요 내용

●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다음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2항)

- 도급금액 3억 원 미만: 5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0억 원 이상 ~ 70억 원 미만: 10% 이상 직접시공

– 직접시공의 산정방식을 종전의 총공사비 기준에서 노무비 기준(직접시공 노무비/총 노무비)으로 변경

●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 이용 포함)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제4항)

–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인정

② 처벌 내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4호)

③ 예외 사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계획 통보 생략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의 경우
  -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④ 위반 사례

사례 2-7	경기 공고-제2024-5522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4호
위반 내용	'000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
처분 결과	과태료 600,000원

사례 2-8	전남 공고-제2023-625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4호
위반 내용	"000 하천재해예방사업" 관련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처분 결과	과태료 500,000원

사례 2-9	서울 공고-제2023-6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4호
위반 내용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처분 결과	과태료 750,000원

(4) 하도급 계약 발주자에게 미통보

① 주요 내용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재하도급을 승낙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

● 하도급계약의 통보 및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다음의 서류 첨부할 필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3항)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 포함

  *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인정

하도급계약의 통보 첨부 서류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 첨부 서류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 사본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	•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 하수급인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지급 합의서 사본

② 처벌 내용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③ 예외 사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발주자에게 미통보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 수급인의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하도급 제한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④ 위반 사례

사례 2-10	충남 공고-제2024-1373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위반 내용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처분 결과	과태료 220,000원

사례 2-11	경기 공고-제2024-5799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위반 내용	000에서 발주한 '000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을 위반
처분 결과	과태료 400,000원

사례 2-12	인천 공고-제2024-167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위반 내용	000건설과 하도급 계약한 사항의 통보기한 미준수하였다고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행정처분 요청
처분 결과	과태료 204,000원

(5)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① 주요 내용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다음의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

-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times 2$$

② 처벌 내용

-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③ 예외 사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④ 위반 사례

사례 2-13	서울 서초구공고-제2024-181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위반 내용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처분 결과	과징금 20,000,000원

사례 2-14	경기 공고-제2024-5846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위반 내용	민간에서 발주한 '경기0000교회 신축공사'중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을 위반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4년 08월 30일 ~ 2024년 09월 29일)

사례 2-15	인천 공고-제2024-906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위반 내용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의 의심업체 통보)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4년 04월 03일 ~ 2024년 05월 02일)

⑤ 유권해석 및 판례

유권해석 사례 2-1	법제처 10-0432, 2010. 12. 23.
질의요지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의 준공시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이므로 공사기간을 기성금 지급주기로 하는 기성금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라야 함 $보증금액 = \frac{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 \times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times 2$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출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음
회답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임

(6)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현장

① 주요 내용

-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무등록자 및 공사내용과 다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모두 위반 대상

② 처벌 내용

- 원도급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 하도급자 중 무자격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
- 하도급자 중 무등록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

③ 위반 사례

사례 2-16	경기 공고-제2024-584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민간 발주, '0000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4년 09월 26일 ~ 2025년 02월 22일)

사례 2-17	전북 공고-제2024-1196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6,840,000원

사례 2-18	부산 기장군공고-제2024-1149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45,255,000원

④ 유권해석 및 판례

유권해석 사례 2-2	법제처 21-0072, 2021. 4. 28.
질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게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발주하는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가 클수록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담보할 필요성이 크므로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하려는 취지 • 따라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이를 경미한 건설공사 규모로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그 하수급인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제한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은 문언 그대로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나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사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를 그 하수급인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함
회답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됨

판례 2-1	수원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구단11105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소외인1(민간발주자)으로부터 타운하우스 50세대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외인2(무등록사업자)에게 외벽단열공사를 계약금액 1,265만원에 하도급 • 피고(경기도지사)는 청문절차 이후 '무등록사업자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 처분
판단	• 건설업 등록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법 제9조제1항 단서는 법 제25조제2항, 제16조에서 정하는 하수급인의 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고, 경미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만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필요(비례의 원칙)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량권의 일탈·남용 인정
해설	•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등록 의무의 예외사유이나, 이는 도급계약 관계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에서 경미한 공사를 이유로 무등록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 하도급 위반으로 처벌

(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위반

① 주요 내용

●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다음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2항)

- 도급금액 3억 원 미만: 5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0억 원 이상 ~ 70억 원 미만: 10% 이상 직접시공

②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③ 예외 사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시공 의무에 대한 예외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 위반 사례

사례 2-19	경북 문경시공고-제2024-1355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위반 내용	건설공사 직접 시공 불이행(2023년 김천시 경상북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4년 09월 01일 ~ 2025년 01월 31일)

사례 2-20	경기 공고-제2024-5802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위반 내용	'0000 차로 교통체계공사(차로확장)'와 관련 직접시공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
처분 결과	과징금 23,750,000원

사례 2-21	충남 공고-제2023-932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위반 내용	건설공사 직접 시공 불이행
처분 결과	과징금 31,932,000원

(8) 일괄하도급 위반

① 주요 내용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불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 일괄하도급의 범위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해당

②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③ 예외 사유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76호)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1조제3항)
  -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 위반 사례

사례 2-22	서울 강남구공고-제2024-165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일괄하도급 위반(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4년 07월 20일 ~ 2025년 02월 19일)

사례 2-23	경기 공고-제2024-531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00 관망정비공사'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을 위반
처분 결과	과징금 64,354,000원

사례 2-24	경남 밀양시공고-제2023-16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일괄하도급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4년 07월 20일 ~ 2025년 02월 19일, 영업정지 4개월에서 1개월 감면)

⑤ 유권해석 및 판례

판례 2-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사실관계	• 피고(건설사업자)는 "지방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괄하도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시민단체 및 언론의 의혹 제기로 주요 부분의 일부를 직접 시공 – 본 사건은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따른 형사상고사건
판단	•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제96조 제4호의 위반죄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 • 대법원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체결 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 이후 환송판결(대구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3노64 판결)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
해설	• 일괄하도급 위반죄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시에 성립

(9)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① 주요 내용

● 수급인은 일정한 요건 외에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불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②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③ 예외 사유

●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20% 범위 내 하도급 가능(법 제2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시행령제31조의2)
– 전문건설사업자: 발주자 서면 승낙(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제1호)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20% 범위 내 신기술, 특허,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등(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의2)

④ 위반 사례

사례 2-25	경기 공고-제2024-561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00부대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승인없이 20%이상 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19,459,000원

사례 2-26	충북 제천시공고-제2024-836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4,400,000원

사례 2-27	경남 김해시공고-제2023-4984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김해 00공사' 관련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처분 결과	과징금 4,640,000원

유권해석 사례 2-3	법제처 19-0004, 2019. 4. 12.
질의요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주된 전문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를 동일한 업종이 아닌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과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므로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종"의 건설업자에 대해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음
회답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음

(10) 재하도급 위반

① 주요 내용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 불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②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③ 예외 사유

-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20% 범위 내 하도급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7)
  - 전문건설사업자: 발주자 서면 승낙+수급인 서면 승낙+20% 범위 내(신기술, 특허,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등)
  - 종합건설사업자: 발주자 서면 승낙

④ 위반 사례

사례 2-28	서울 서초구공고-제2024-176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4,291,000원

사례 2-29	경북 포항시공고-제2024-186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18,674,000원

사례 2-30	경기 수원시공고-제2024-578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5,028,000원

⑤ 유권해석 및 판례

유권해석 사례 2-4	법제처 22-0015, 2022. 4. 6
질의요지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그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지?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는 재하도급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 재하도급할 수 있는 다른 경우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와 재하도급하려는 건설공사가 모두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와 다르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1호의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를 도입하면서,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상대방의 업무영역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총 도급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전문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종합건설업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전문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있게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만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회답	• 종합건설업자는 그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유권해석 사례 2-5	법제처 17-0305, 2017. 7. 24
질의요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서면승낙만 받으면 되는지?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되,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가목)과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나목)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함
회답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함

판례 2-3	인천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구합55477 판결
사실관계	• 원고(전문건설사업자)는 학교법인이 발주한 증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하도급 • 원고는 소외인(무등록자: 판넬 도소매업)과 원고를 '원사업자', 소외인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하는 외주계약서 작성 • 피고(부평구청장)는 무면허업체에게 재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4,870,800원 부과(재하도급금액 40,590,000×24%×1/2 감경)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 • 원고는 근로자대표(십장) A의 요구로 하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무면허업체 명의로 된 각종 보증서, 인건비 초과 청구자료 등을 비추어볼 때, 재하도급 위반에 따라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해설	•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시공참여자(십장)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시공참여자는 2007. 5. 1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2008. 1. 11. 시행)

(11) 10억 원 미만공사 하도급 위반

① 주요 내용

-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②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③ 위반 사례

사례 2-31	전남 영광군공고-제2023-743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지방도000호선 순천 00교 보수공사 총 공사금액 10억미만 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1,198,000원

사례 2-32	경기 공고-제2023-5587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경기도 의정부시로부터 도급받은 전문공사 '00초교 앞 보도육교 정비 공사' 관련하여 10억미만 도급공사임에도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과징금 2,251,000원

사례 2-33	전남 공고-제2023-301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10억 미만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처분 결과	영업정지(2023년 03월 09일 ~ 2025년 06월 08일)

(12) 교차수주현장 하도급 위반

① 주요 내용

- 상대업역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 승낙하에 도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하도급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

②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③ 위반 사례

사례 2-34	인천 공고-제2024-654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 결과	과징금 8,025,000원

사례 2-35	서울 공고-제2024-307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 결과	과징금 1,334,960원

사례 2-36	경북 봉화군공고-제2023-393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위반 내용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 결과	과징금 3,498,000원

(13) 하도급 참여 제한 위반

① 주요 내용

-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및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수주 불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5항)
  - 하도급 참여제한은 다음의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받은 경우를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

-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등

②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7호)

(14) 건설기술인 미배치

① 주요 내용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
  - 해당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의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자격
700억 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	• 기술사
5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 원 이상	•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 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3항)

–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② 처벌 내용

-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제4호)

③ 예외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건설기술인 미배치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 포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④ 위반 사례

사례 2-37	강원 공고-제2024-1190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7호
위반 내용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부적당
처분 결과	동일위반행위 금지 시정조치

사례 2-38	경북 상주시공고-제2024-285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7호
위반 내용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부적당
처분 결과	부적절한 건설기술인 배치에 의한 시정조치

사례 2-39	서울 영등포구공고-제2024-1544호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7호
위반 내용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부적당
처분 결과	시정명령/처분 전 시정완료

(15)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① 주요 내용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

-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보관 의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명시 사항〉

-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처벌 내용

● 300만원 이하 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의3호)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16) 임금 직접 미지급

① 주요 내용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제2항)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의 예외: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등

② 처벌 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 제기 불가(반의사불벌죄)

(17) 임금대장 미작성 및 명세서 미교부

①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제2항)

② 처벌 내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18) 임금비용 매월 미지급

① 주요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할 의무(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제1항)
  -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

② 처벌 내용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
  -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19) 퇴직공제 미신고, 미납

① 주요 내용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할 의무(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
  -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구성
  -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함께 제출할 의무

② **처벌 내용**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 전자카드 미발급

① **주요 내용**

● 다음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할 의무(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전자카드 발급 사업장〉

•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 전자카드 발급 사업장은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의무

–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 사용 가능

② **처벌 내용**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

–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3.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점검 방법

(1) 신고

● 신고 과정은 크게 신고접수 및 담당지정 -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 조사 - 조사결과 조치 - 행정처분 확정시 포상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의 5단계로 구성



● (신고접수 및 담당지정) 신고자가 관련 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을 지정

-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피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기재

  * 근거자료: 계약서·지시부 등 관련공문·서류, 사진 등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미처리 가능(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또는 보완요청 통보)

〈신고 미처리 가능 사유〉

-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 중인 경우
-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 관련 행정기관에 동일내용으로 신고된 경우
- 신고자 본인이 신고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 신고자가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자료를 제출·보완하지 않는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의 지원센터에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 조사) 신고된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 조사

- 위법여부 조사: 각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의 매뉴얼에 따라 위법여부 조사

  * 위법여부 조사를 위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자료' 및 '관련 서식' 요구

● (조사결과 조치) 위법여부 조사에 따른 결과 조치

- 조사결과 조치: 위반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위반내용 통보 조치
-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행정기관 고발여부 등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 포상금 지급 가능여부 및 절차 안내

● (포상위원회 심의) 행정처분 확정 시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의 적정성 심의

-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 (포상금 지급) 심의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신고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중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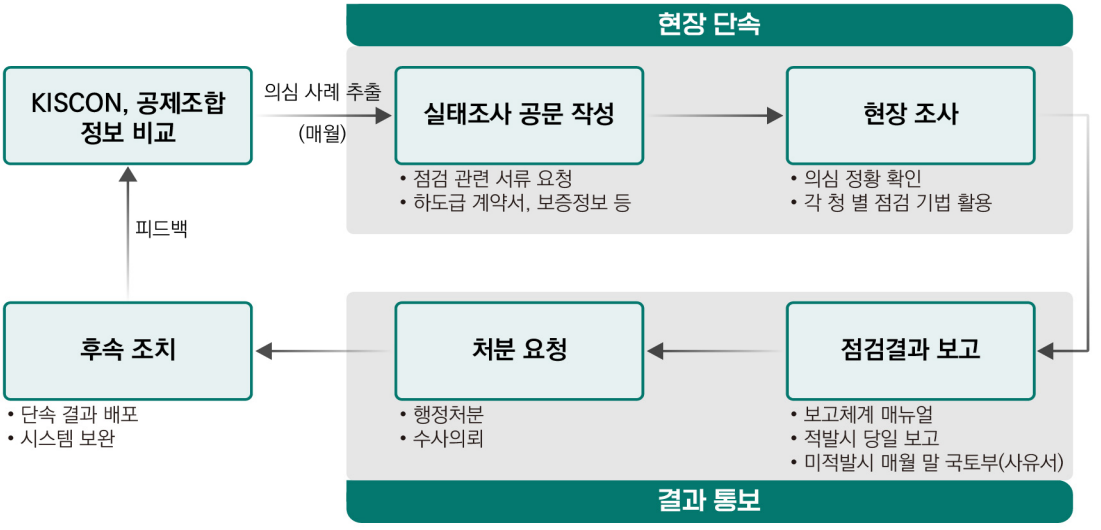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불공정행위	법 근거조문	신고포상금 지급 최대금액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제1호	200만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제2호	200만원
3.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제3호	200만원
4.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를 위반하여 부당특약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제4호	200만원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제5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서 규정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3에서 규정한 실정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간섭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제5항,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바.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2) 조기경보시스템

● 조기경보시스템은 크게 KISCON, 공제조합 정보 비교 - 실태조사 공문 작성 - 현장 조사 - 점검결과 보고 - 처분 요청 - 후속 조치의 6단계로 구성

- 다만, ① KISCON, 공제조합 정보 비교 – ② 현장 단속(실태조사 공문 작성 및 현장 조사) – ③ 결과 통보(점검결과 보고 및 처분 요청) – ④ 후속조치로 정리 가능



● (KISCON, 공제조합 정보 비교) KISCON, 공제조합 정보 비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의심업체 추출

- 공사대장(키스콘), 하도급보증(공제조합) 간 하도급업체의 정보가 상이한 경우 의심사례 추출
- 건설공사정보(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계약보증,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현장정보, 하도급지킴이 대금지급정보 등)를 매월 교차분석하여 의심현장을 추출
- 단속대상 현장목록 추출 방법은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 지표 10개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현장 추출(적시성을 위해, 공정률 50-80% 구간 공사 현장에 한하여 추출)

〈의심지표 및 주요 불법하도급 유형〉

의심지표	주요 불법하도급 유형
① 노무비지급률 미달, ② 공제부금 미달, ③ 전자카드사용률 미달, ④ 전자카드 미계약 업체, 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 ⑥ 사업장이행등급 저조, ⑦ 하도급 업체 수 미달, ⑧ 종합업종 간 하도급, ⑨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신규 수주 현장, ⑩ 비계, 가시설 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① 재하도급 위반, ② 일괄하도급 위반, ③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 현장, ④ 전문공사 하도급제한 위반, ⑤ 10억 미만 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⑥ 교차수주현장 하도급제한 위반, ⑦ 중대재해 및 사고현장 무등록 하도급 위반

주: ③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 현장과 ⑦ 중대재해 및 사고현장 무등록 하도급 위반은 내용적으로는 같으며, 중대재해 현장 여부에 따른 구별

● (현장 단속) 현장단속은 실태조사 공문 작성 및 현장 조사로 구분

- 실태조사 공문 작성: 실태조사 공문을 작성한 뒤, 점검을 위한 관련 서류 요청

  * 하도급 계약서, 보증정보, 출력일보, 작업일보 등 요청

- 현장 조사: 키스콘 기반 의심 정황 우선적으로 확인 및 각 기관 별 점검 기법을 활용하여 추가 확인 진행

● (결과 통보) 결과통보는 점검결과 보고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매뉴얼에 따라 보고 체계구축 필요

- 보고체계 매뉴얼에 따라 점검 결과 보고함
- 적발시 당일 보고, 미적발시 매월 말 국토부에 사유서와 함께 보고

〈불법하도급 등 현장점검 시 보고체계 매뉴얼〉

배경 및 기대효과	현장점검 보고체계 매뉴얼 서식(샘플)
• 위반시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피점검대상 업체의 부정청탁 등을 통해 무마시키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 구축 • 점검 당일 현장개요, 점검반원 및 적발사항 등 결과를 매일 관련 부서에 보고 • 복귀가 불가한 경우 점검 종료 즉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적발사항, 확인서 업로드를 통해 팀원 간 적발사항 공유 • 이를 통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결과 공식화를 통한 부정청탁 통제 기능 강화 기대	**○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상시단속(00.00) 일일점검 결과보고** <'24. 00. 00.(금), 공정건설지원팀> □ **점검개요** ○ **(일시/장소)** '24.00.00. 10:0~14:00/현장사무실(○○시 소재) ○ **(점검자)** ○○○ 팀장, ○○○ 主 ▪(공사명) ○○공사 ▪(발주자) ㈜○○ ▪(원수급인) ○○종합건설㈜ - 토목건축공사업 ○○위 ▪(하수급인) ㈜○○ ▪(공사기간) '24.00.00.~'25.00.00. - 공정률 00% ▪(공사금액) 00억원 □ **점검결과 (불법하도급 1건, 무자격자 시공 1건)** ○ **(불법하도급)** 원도급사 ○○**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가설공사를 비계공사업을 보유하지 않는 ㈜○○**에 **하도급**함 ⇒ 위반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3호에 의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같은 법 제96조제4호에 의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임 ○ **(무자격자 시공)** 하도급사 **㈜○○건설**(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유)은「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계공사업 등록 없이 비계 공사** 시행 ⇒ 위반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1호에 의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 ※ (무자격자 시공) 건설업 면허는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업종 외 공사 시행 (무등록자 시공)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사 시행 □ **조치계획** ○ ○○**종합건설㈜**는 **행정처분**(○○시) **요청** 및 고발(○○경찰서) 조치 ○ **㈜○○건설**은 ○○시 ○○구**에 행정처분 요청**

- 처분요청은 조사결과 조치를 통한 행정기관 고발 등 진행을 말하며, 처분 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 (후속조치) 후속조치는 단속 결과 배포, 미단속 및 미조치 데이터 등의 사유와 관련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키스콘에 피드백하여 전체 시스템 보완에 활용